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39 호 2022. 4. 14.(목)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99호[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1

예 규

- 울산광역시 북구 예규 제21호[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3
- 울산광역시 북구 예규 제22호[울산광역시 북구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10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83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1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86호[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구간 변경 고시] 18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480호[「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487호[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24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 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22년 4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99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별표 1”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표 2”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의 행위기준을 정비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 변경 (제14조제3항제2호, 제15조제1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별표 2에서 규정한 가액 범위를 적용, 별표 1, 2 삭제
 -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 기간에 한하여 두 배(10만원→20만원)로 상향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2년 4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 예규 제2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

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2. 제1호의 상급 감독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1. 상속·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 근무·취학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인정한 경우

제5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 등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일반적으로 등기가 완료된 날) 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부동산을 상속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한대상자 등은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을 상속 개시일과 다른 일자로 주장하려는 경우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는 별지 서식의 부동산 취득 사실 신고서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위반 시 조치)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 등 사전 절차를 거친 후 시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 2. 제한대상자가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30일)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
- 3. 제한대상자가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제3조제1호 및 제4조제2항 관련)

실·국명	부서명	직제 규정	제한 부동산의 범위	취득제한기간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 공공용 시설(체육시설 및 문화단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해당 사업의 승인, 인·허가 등 이에 수반되는 사업 관련 지역	제한부동산 지역 지정·고시 발령일 전후 각 1년
	관광진흥과		- 관광단지 조성지역	
복지환경국	농수산과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협의대상 지역	
	환경위생과		-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지역	
안전건설국	건설과		-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정 지역 - 도로개설 지역 및 교통혼잡도로 개선 지역 - 도시철도망 구축 지역 및 차세대 신교통 인프라 구축 지역 - 토목공사·보상 지역	
	도시과		- 산업단지 조성 지역 - 도시개발사업 지역 및 산업단지·지구·구역 조성(지정) 지역 - 도시계획 (변경)결정 지역 - 도시재생사업 지역 - 산업단지·도시개발 사업·보상 지역	
	공원녹지과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협의 대상 지역	
	건축주택과		- 공공주택 건립사업 지역	

[별지 서식]

부동산 취득 사실 신고서

(앞쪽)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 ()
	소속	직위	직급 등
	주소		
담당 직무	직무내용 ※ 법령·직제·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취득 부동산 내역]

가. 토지

소유자	관계	소재지	지목	면적 (㎡)	가액 (천원)	취득 일자	소득원	취득사유	비고

나. 건물

소유자	관계	소재지	건물 면적 (㎡)	대지 면적 (㎡)	종류 및 용도	가액 (천원)	취득 일자	소득원	취득사유	비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 개정('21. 10. 2.)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및 예외적 취득에 대한 절차” 등 지침을 마련하여 재산등록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침 제정의 목적 및 정의(제1조 ~ 제3조)
- 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4조)
- 다. 예외적 취득신고 및 신고사항의 확인(제5조 ~ 제6조)
- 라.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제7조)
- 마. 의무 위반 시 조치 등(제8조 ~ 제9조)

울산광역시 복구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동권** (인)

2022년 4월 14일

울산광역시 복구 예규 제22호

울산광역시 복구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 등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울산광역시 복구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상품권의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상품권 구매 및 방법) ①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 목적, 수량, 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관리자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통합 구매하여야 한다.

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2. 여러 부서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부서 간 통합 구매의 주관은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③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 구매금액이 200만원 이상 구매일 경우에는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일 때 직원선호도 조사 등에 따른 경우
2.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우선 구매의 경우

제6조(상품권 사용)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2. 업무성과 우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3.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4. 재난·사고에 따라 발생한 이재민, 피해자, 그 유가족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상품권 사용 제한)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명절 등에 상급기관, 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상급기관, 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 차원에서 내부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제8조(관리대장 작성·관리)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사용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증빙자료)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 또는 배부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수령증, 영수증 등)를 명확히 하여 사용내역을 관리하고 관계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수령한 사람이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인의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중간 수령인의 자필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③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 사용 용도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 기부금 영수증
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경우 : 물품구매 영수증
3.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

제10조(관리감독)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감사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정성
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
3. 상품권의 목적 외 사적사용 여부
4. 상품권 사후관리 실태 등

③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상품권의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상품권 구매·사용내역 공개) 상품권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종류별 구매 용도, 구매 수량, 총 구매액 등을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상품권 구매·사용 관리대장

연 번	구 매 내 역									사 용 내 역					결 재			
	구매 일자	품명 (종류)	구매 목적 (용도)	구매처	결제 방법	예산 과목	구매 수량 (매)	단가 (원)	금액 (원)	사용 일자	배부처	지급 수량	잔량	수 령 인		담당자	담당	부서장
														소속	성명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상품권 구매·사용내역

부서명:

기 간:

연 번	구매일시	상품권 종류	구매수량	구매액(원)	사용내역	비 고

[작성방법]

1.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작성
2. 상품권 종류: 온누리상품권, 문화(도서)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기타상품권 등
3. 구매액: 상품권 구매 시 할인을 받은 경우 비고란에 할인금액 기재
4. 대량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등으로 받은 상품권도 공개내역에 포함하고 비고란에 내용 명시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2022. 4. 1.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침 제정의 목적, 상품권의 정의 및 관리자(제1조 ~ 제2조)
- 나. 적용범위 및 다른 지침과의 관계(제3조 ~ 4조)
- 다. 상품권의 구매 및 방법(제5조)
- 라. 상품권의 사용 및 제한(제6조 ~ 제7조)
- 마. 관리대장 작성·관리 및 증빙자료(제8조 ~ 제9조)
- 바. 관리감독(제10조)
- 사. 상품권의 구매·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제11조)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83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사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23길 8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무룡동 723-3번지	하천의 명칭	○ 무룡천
점용 내용	○ 콘크리트전주 설치(5본)	점용 면적	○ 일시: 3.50m ² ○ 계속: 0.41m ²
점용 기간	○ 일시: 2022. 4. 13. ~ 2022. 4. 14. ○ 계속: 2022. 4. 15. ~ 2026.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86호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고 시 일 : 2022. 4. 14.
2. 고시방법 : 관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아름1길)
※ 붙임(조서 및 도면) 참조
4. 변경사유 : 도로구간 주도로 구간 연장 설정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52-241-72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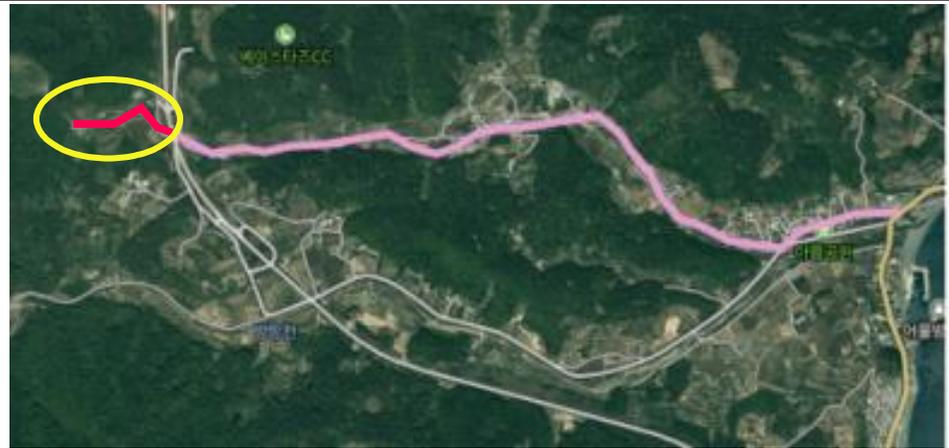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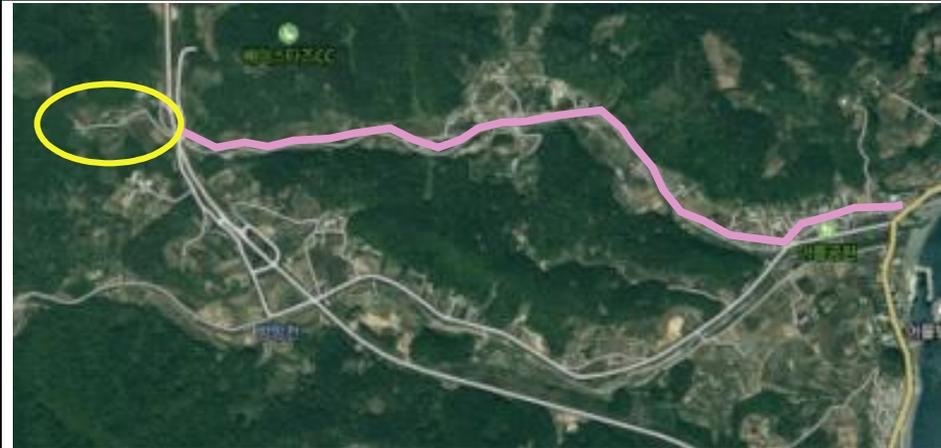
붙임 :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1부.

도로구간 변경 조사 및 현황도

구분	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m)	폭 (m)	위계	기초 간격	기초 번호	변경사유	관할 행정 구역
		시점	종점	중심선							
변경전	아름1길	당사동 527-5	어물동 1358	도면 참조	2349	4	길	20	1~234	주도로 연장설정	강동동
변경후	아름1길	당사동 527-5	어물동 1240-146	도면 참조	2599	4	길	20	1~262		

현황도면 (변경 전)

현황도면 (변경 후)



도로명주소 기본도 (변경 전)

도로명주소 기본도 (변경 후)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480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3항 1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앞서 동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에 따른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제3항 1호
4. 공시송달 당사자 및 내용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이에프(2F)	김○경	울산광역시 복구 동대5길 37-1(호계동, 지상2층)	영업소 폐쇄

5. 공고(게시)기간 : 2022. 4. 13. ~ 2022. 4. 29.(17일간)
6. 청문일시 및 장소 : 2022. 5. 2.(월) 10:00 울산복구청 4층 환경위생과
7. 청문 주재자 : 울산광역시 복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주무관
8. 유의사항

- 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치고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이 시행됨

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052-241-7783)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폐쇄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487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강동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4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 나. 명 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강동골프장)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기정) 719,973.8㎡ → (변경) 715,485.8㎡ (골프장 18홀)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코리아신타크 주식회사 대표자 백인균
 -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2019. 7. 4. ~ 2022.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변경)
7.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5	체육시설	골프장	북구 어물동 산43일대	719,973.8	감)4,488	715,485.8	'09.2.19 울고45호	면적 감소

■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25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감소: 감 4,488m² - 719,973.8→715,485.8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B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경계 조정

8. 열람기간: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14일 간

9.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7993)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